

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 배경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 배경
2.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현황
3. 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전략 평가

주요 내용 ●●●

- 2015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에서 신(新)대외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2007년 10월에 열린 제17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후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으며,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에서 자유무역구 전략이 중국의 개혁 심화 및 신(新)개방경제체제 구축의 주요 원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의 성과로는 △ 유럽 국가와의 FTA 체결 △ 한·중 FTA 체결 △ 중국·호주 FTA 체결 △ 중국·ASEAN FTA 업그레이드 버전 체결 △ 국내 4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등이 있음.
 - 중국은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선진국과의 양자간 협정 △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협정 △ 중국 내부의 자유무역구 등 4가지 유형으로, 2015년 말 기준 22개 국가 및 지역을 아우르는 총 14곳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함.

중국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 현황

체결 및 발효	다자간	중국·ASEAN
	양자간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스위스, 호주, 한국, 파키스탄,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중국 내부	CEPA, ECFA, 국내 4대(상하이·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협상 진행	다자간	GCC, RECP, 한·중·일
	양자간	노르웨이, 스리랑카, 몰디브, 조지아
연구 단계	다자간	FTAAP
	양자간	인도, 콜롬비아, 몰도바

-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제경제 정세에 따른 순응이자 외부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이며, 국내외 경제리스크를 극복하고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국경제는 TPP, 생산능력 과잉,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 국내외 경제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구 전략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통합 및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현재 초기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어 △ 영향력 확대 △ 전문성 배양 △ 시스템 조정 등의 보완이 필요함.

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 배경 및 평가

1. 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 배경

■ 2013년 11월 9~12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자유무역구 전략이 중국의 개혁 심화 및 신(新)개방경제체제 구축의 주요 원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2007년 10월에 열린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대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후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으며,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에서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 가속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략이 중국의 중요 대외전략으로 확립됨.
-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주변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을 가속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자유무역구 건설 추진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생산능력 협력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역외에 광범위한 ‘일대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브릭스(BRICS) 국가를 포함한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을 중국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형성의 중점 대상으로, 기타 지역적 무역 블록(regional trading blocs) 및 일부 개발도상국 시장과의 연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의 주요 노선이 될 것임.
- 3중전회에서 통과 후 발표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는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및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형성방안을 제시함.
 - 양자 및 다자간 개방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의 융합점을 찾고, 주변국을 기점으로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을 가속화해야 함.
 - 시장 진입, 세관 감독, 검역 등 관리 시스템의 개혁과 환경보호, 투자보호, 정부조달 및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안 관련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세계로 향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 2014년 12월 5일 시진핑(习近平) 중공중앙 총서기는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를 주제로 중공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제19차 단체교육(集体学习)¹⁾을 실시하고, 자유무역구 전략 추진 가속화와 대외개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을 가속화함으로써 신(新)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경제발전과 국제경쟁을 주도해야 함.
 -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은 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해 발전을 이룩하는 두 개의 원동력으로, 뉴노멀 경제시대에 진입하여 중국 경제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확대가 필요함.
 -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전략은 주변 환경과 ‘일대일로’ 및 글로벌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형성 구상에 입각하여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지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왕래의 편의성과 상호

1) 후진타오(胡锦涛) 전(前) 국가주석이 2002년(12월 26일)부터 중공중앙정치국원을 대상으로 제도화하여 실시한 학습으로, 매년 국가 정세 및 주요목표에 따라 주제가 결정됨.

이익의 융합을 중시해야 함.

- 서비스업 분야를 적극 개방하고, 협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합리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대비방안을 모색하고,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선행 시범과 과학적 논증 및 종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2015년 11월 9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제18차 회의에서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이 심의 통과됨.
- 동 문건은 12월 17일 국무원이 공식 발표함(이하 내용 참고).
-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는 개방 확대 유지 및 공동 번영의 방안으로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전략을 제시함.
-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수준을 제고하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외 개방의 새로운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음.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²⁾을 추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를 건설하는 등 전 세계로 향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재편에 적극 참여함.

■ 2015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에서 新대외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 개방 확대 및 개혁 심화 △ 전면적 참여 및 중점적 돌파 △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 △ 과학적 평가 및 리스크 대비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함.
- [개방 확대 및 개혁 심화] 자유무역구 개방 확대를 통해 개방수준을 제고하고, 국제 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한편, 전면적 개혁심화를 추진하여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공간을 개척해야 함.
- [전면적 참여 및 중점적 돌파] 자유무역구 등을 포함한 각종 지역 무역 협력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주요 협력국가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 [상호 이익 및 공동 번영] 이익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현황 또한 고려하여 상호 이익을 위한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설정함으로써 전 세계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과학적 평가 및 리스크 대비] 과학적 논증 강화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자유무역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개방적 정부 감독관리 시스템을 완비하는 한편, 엄격한 안전 심사와 반독점 및 사후 관리감독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 자유무역구 확대와 관련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

유무역구 건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단기적으로 현재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 진행을 가속화하고, 필요조건 완비 후 기존 자유무역구의 자유화 수준 제고 및 주변국과 지역 내 자유무역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중국 대외무역 총액 내 협정 국가와의 무역 총액 비중이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의 수준을 초과하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인접국가 및 지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포함한 주요국과의 전방위적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국 대외무역 및 상호투자의 편의성 제고를 실현함.

■ 「의견」은 △ 자유무역구 건설 수준 제고 △ 제도 강화 △ 보장시스템 구축 완비 △ 지원 기제 완비 등을 전략 시행의 주요 방향으로 명시함.

- 첫째, 자유무역구 건설 수준 제고를 위해 상품무역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업 분야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규칙 제정 및 투자진입 규제 완화, 무역 편리화 등을 추진함.
 - 자유무역협정국과의 양방향 진입을 허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 설계 및 고효율 글로벌 가치 사슬 구축을 추진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상품무역 시장 개방 확대에 공동 번영을 실현함.
 -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유아 및 양로 산업, 건축설계, 회계감사, 비즈니스 물류,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 대한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서비스업 분야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경제구조 조정 및 발전 방식의 전환을 촉진함.
 - 투자시장 개방 및 외자관리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여 투자진입 규제 완화 및 외상투자 환경의 최적화를 실현하고, 협정 내용 중 투자 관련 분야를 확대하며, 자유무역구 내 위안화 자본 프로젝트의 자유 대환 시범운용을 추진함으로써 역내외 국제 투자 및 용자 편리화를 촉진함.
 -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 협정국과 원산지 규정 강화 및 국제 무역 단일창구 시행 등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을 협력 추진함으로써 세관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향상시킴.
- 둘째,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 및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전제로 △ 지적재산권 △ 환경 △ 전자상거래 △ 정부조달 분야의 제도 강화 방향을 제시함.
 - [지적재산권]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분야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하며, 기업 및 국민의 지적재산권 관련 의식 수준을 제고함.
 - [환경] 환경보호 법안을 강화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환경보호 평가기제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무역 및 투자 분야 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함.
 - [전자상거래] 자유무역 협정국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간 유리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규칙을 제정함.
 - [정부조달] 필요조건 완비 시, 자유무역협정 프레임 내에서 협정국과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추진함.
- 셋째, 자유무역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확대를 위해 △ 외상투자 관련 법규 제정 △ 사후 관리를 위한 기초 제도 완비 △ 무역규제 조치 시행 △ 무역조정 지원제도 수립 등 보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함.
 - [외상투자 관련 법규 제정] 중외 합자 및 합작 경영 기업법과 외자기업법 등 외상투자 관련 법률을 수정하여 새로운 외자 법률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외자 관리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적용 및 외상투자 국가안전 심사제도 완비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외자정책을 유지함.

- [사후 관리를 위한 기초제도 완비] 정보 공유 및 종합 법 집행 제도, 기업 연간보고서 공시 및 비정상 경영 리스트 작성 제도, 시장 감독관리의 사회참여 제도, 외상투자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역외 상환독촉 보장기제 구축 등 시장주체의 개방 확대 이후 과정에 대한 기초적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함.
- [무역구조 조치 시행] 산업 개방 확대와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자유무역협정의 합법적 권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내 산업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앙·지방·산업·기업 등 4중 주체의 무역마찰 대응기제를 강화함.
- [무역지원조정 지원기제] WTO 규정과 국내 정세에 부합하는 무역조정 지원기제를 건립함으로써 관세 양허로 피해를 입은 산업,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산업 조정을 촉진함.
- 넷째, 자유무역구 협상과 관련해 제3자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을 강화하며, 자유무역구 건설에 필요한 인재 지원 강화 등 지원기제를 완비함.
- 제3기구를 통해 자유무역구 협상 내용의 이해득실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구 내 무역, 투자 등 분야별 관련 법규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를 시행하며, 서부지역을 포함한 지방과 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역내 지역의 공동 발전과 기 발효 자유무역협정 강화를 도모함.
- 자유무역협정 인력을 증강하고, 대외 협상 전문가 및 경제외교 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을 강화함.

표 1. 「의견」의 주요 내용

기본 원칙	· 개방 확대 및 개혁 심화 · 전면적 참여 및 중점적 돌파 ·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 · 과학적 평가 및 리스크 대비	
목표	단기	·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 진행 가속화 · 기존 자유무역구의 자유화 수준 제고 · 주변국과 지역 내 자유무역구 건설 적극 추진 · 중국 대외무역 총액 내 협정 국가와의 무역 총액 비중 선진국 및 신흥 경제국 수준 초과 달성
	중· 장기	· 인접국가 및 지역, ‘일대일로’ 연선국가 등 주요국과 전방위적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형성 · 중국 대외무역 및 상호 투자의 편의성 제고를 실현
전략 방향	자유무역구 건설 수준 제고	· 상품무역 개방 수준 향상·서비스업 분야 개방의 점진적 확대 · 규칙 제정 및 투자진입 규제 완화 · 무역 편리화 추진
	제도 강화	· 자유무역구 건설을 통한 분야별 제도 강화
	보장시스템 구축	· 외상투자 관련 법규 제정 · 사후 관리를 위한 기초 제도 완비 · 무역구제 조치 시행 · 무역조정 지원제도 수립
	지원 기제 완비	· 자유무역구 협상 관련 제3자 평가제도 구축 · 기 발효 자유무역협정 강화 및 유지 · 자유무역구 건설에 필요한 인재 지원 강화

자료: 「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 国务院.(검색일: 2016. 2. 26).

2.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현황

■ 2013년 중국은 4월과 7월에 걸쳐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와의 FTA를 잇달아 체결하면서 유럽 국가와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시작, 201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두 협상안이 동시 발효됨.

- 아이슬란드는 유럽 국가이자 북극권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중국은 아이슬란드와의 FTA를 계기로 북극지역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음.
 - 양국 협정서는 화물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세관 프로세스, 원산지 규정,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구체적 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WTO 협약 내용을 기초로 개방수준을 제고함.
 - 협정 발효를 기점으로 아이슬란드는 중국의 대(對)아이슬란드 수출총액 중 약 99.8%를 차지하는 중국의 모든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제로 관세를 시행, 중국은 대(對)아이슬란드 수입총액의 81.6%에 해당하는 7,800여 개 세관품목에 대해 제로 관세를 시행함.
 - 양국은 향후 세관품목 및 무역량 기준으로 각각 약 96%, 100%에 달하는 상품들에 대한 단계적 제로 관세적용을 최종 목표로 합의함.
- 스위스는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국가로, 중국·스위스 FTA 체결 당시 중국이 달성한 가장 전면적이고 개방수준이 높은 FTA 중 하나로 평가됨.
 -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스위스의 지리적 특성과 EU 회원국들과 스위스 간의 밀접한 경제무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스위스 FTA 체결은 중국의 대(對)유럽 자유무역지대 확대에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음.
 - 스위스는 대(對)중 수입상품의 99.7%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하는 한편, 나머지 0.3% 중 0.29%의 상품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였으며, 중국은 대(對)스위스 수입상품의 84.2%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하고, 전체 수입상품의 12.3%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
 - 또한 양측은 과거 협상에서 논의한 적 없던 환경, 노동, 취업협력, 지적재산권, 정보교류,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통 인식을 찾기로 합의함.

■ 2015년 6월 1일 한국과 중국이 협상 개시 2년여 만에 FTA를 체결,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발효됨.

- 한·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경제 개방을 추진하는 첫 협정이자 동북아 지역 내 국가간 체결한 첫 번째 협정임.
 - 양국은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서비스무역 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적용과 투자 분야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 동북아 역내 국가간 체결한 첫 번째 FTA로서 향후 한·중·일 FTA 및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양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음.

- 협정에 의하면 발효 20년 차인 2034년까지 양국은 90%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관세 품목에 대해 단계별로 제로관세를 실현함.

- 최초 협정문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 규범협력 등 17개 분야의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환경 등 '21세기 경제무역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각 측의 무역 자유화율은 각각 품목 수 기준 92%, 90.7%임.
- 협정 발효를 기해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에는 5,700여개 품목에 대한 2차 관세 인하가 시행됨.
- 농수산물에 포함된 초민감 품목은 양허³⁾ 제외 30%, 자율관세할당⁴⁾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되어, 주요 농수산물(쌀, 고추, 마늘,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

■ 2015년 6월 17일 약 10년의 협상기간을 거처온 중국·호주 FTA가 정식 체결, 같은 해 12월 20일 발효됨.

- 호주는 중국과 FTA를 체결한 최대 선진 경제국이 되었으며, 호주와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은 환태평양 경제 영토 확장 효과를 얻게 됨.

- 호주와의 FTA 체결로 중국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리스크 해소방안의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국 주도의 FTAAP 및 RCEP 건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됨.

- 중국·호주 FTA는 세계 12대 경제블록 형성을 의미하며, 중국이 체결한 무역 및 투자 분야 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FTA 중 하나임.

- 양국은 화물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10여 개 분야에서 이익균형 실현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로 했으며, 협정 발효를 기점으로 양측 수출 무역 총액의 85.4%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제로관세가 적용됨.
- 호주는 5년 이내에 중국이 호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시행하고, 중국은 최장 15년의 과도기를 거쳐 96.8%의 호주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할 예정임.
- 서비스 분야에서 FTA 발효와 동시에 호주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對중 개방을 진행, 중국은 반대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호주에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
- 투자 분야에서 양측은 상호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호주는 중국 기업의 對호주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편리화를 추진할 계획임.

■ 2015년 11월 22일 CAFTA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맹의 <중국·ASEAN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 협정> 및 부속 협정 수정에 관한 의정서(中华人民共和国与东南

3) 상품의 경우 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의 경우 일정 업종을 개방하기로 하는 등 WTO 체제 내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

4) 수입물량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관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

亚国家联盟关于修订<中国—东盟全面经济合作框架协议>及项下部分协议的议定书)」(이하 「의정서」)를 체결함.

-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⁵⁾ FTA(CAFTA: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는 중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0년 1월 1일 전면 발효됨.
 - CAFTA는 인구 19억 명과 GDP 총액 6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체제로, 중국과 ASEAN 간 교역이 사실상 영세율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함.
 - 2010년 CAFTA 발효로 중국과 ASEAN 6개 회원국(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간 교역품목의 93%인 7천여 개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며, ASEAN 4개 신흥회원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2015년부터 90%의 교역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
- 「의정서」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첫 업그레이드 버전 의정서로, 화물 및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기술 협력 등 분야에서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특히 원산지 규정 및 무역 원활화 조치에 대한 집중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기존 협상에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 40%’ 기준⁶⁾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었음.
 - 수정 이후, 기업은 3천여 종의 상품에 대해 ‘역내부가가치비율 40%’ 기준 및 ‘4단위 분할 3회 변경’⁷⁾ 등 두 가지 원산지 인정 기준 중 자체 선택이 가능해짐.
- 「의정서」의 체결은 아시아 지역 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에 기초를 제공할 것이며, 중국과 ASEAN 양측의 경제발전에 新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2020년 내에 양자간 무역총액 1조 달러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욱 긴밀한 ‘중국·ASEAN 운명공동체’ 구축과 RCEP 협상 및 FTAAP 건설 추진을 위한 협력을 심화할 것임.
- 중국은 지속적으로 주변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주요 대상으로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22개 국가 및 지역을 아우르는 총 14곳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함.
 - 중국은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선진국과의 양자간 협정 △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협정 △ 중국 내부의 자유무역구 등 4가지 유형으로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형성 중임.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FTA(CAFTA)
 - 선진국과의 양자간 협정: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스위스, 호주, 한국

5)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6) 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 협정 당사국(역내)에서 수입된 상품을 가공하여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7) 4단위 분할 3회 변경 기준: 협정 당사국(역내)에서 수입된 상품을 가공하여 HS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협정: 파키스탄,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 중국 내부의 자유무역구: 중국-홍콩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⁸⁾ 중국-마카오 CEPA,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⁹⁾ 상하이(上海)·톈진(天津)·광둥(广东)·푸젠(福建) 자유무역시범구
-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협정으로는 3건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5건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있음.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국-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FTA, 역내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중·일 FTA
- 양자간 협정: 노르웨이, 스리랑카, 몰디브, 조지아, 중국-파키스탄 FTA 제2단계 협상
- 또한 인도·콜롬비아·몰도바 등 국가와의 양자간 협상 진행을 준비 중이며, FTAAP 건설을 구상 중임.

표 2. 중국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 현황

체결 및 발효	다자간	중국·ASEAN
	양자간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스위스, 호주, 한국, 파키스탄,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중국 내부	CEPA, ECFA, 국내 4대(상하이·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협상 진행	다자간	GCC, RCEP, 한·중·일
	양자간	노르웨이, 스리랑카, 몰디브, 조지아
연구 단계	다자간	FTAAP
	양자간	인도, 콜롬비아, 몰도바

자료: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검색일: 2016. 3. 2).

■ 한편 국내에서는 2013년 9월 출범한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FTZ: Free Trade Zone)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2015년 4월 광둥(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신설 자유무역시범구가 동시 개장함.

- 네 곳의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기존 시행 내용 및 성과를 기초로 운영하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명확한 포지셔닝을 구축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출범 당시 지정됐던 28.8km² 면적에서 120.7km²로 확대되면서 기존 범위 및 신규 편입 구역의 기능을 세분하고, 시범구를 중심으로 정부의 중점 역할을 전환, 외상투자 네거티브 관리 방식 적용 및 기업 진입절차 간소화 등 금융혁신과 시장개방 관련 개혁 심화방안을 추진함.

8) 상품·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 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FTA의 더 넓은 의미이나 사실상 FTA와 동일함.

9)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무역 개방, 투자 보장, 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임.

- 광둥 자유무역시범구는 제도적 혁신을 바탕으로 중국 내륙과 홍콩 및 마카오 간 경제통합 심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新개혁개방의 시범 역할을 수행함.
- 텐진 자유무역시범구는 징진지(京津冀) 공동발전 프로젝트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 징진지 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시행하고, 전체 물류 통관자본을 30% 절감함.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는 타이완(台湾)과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주요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연선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투자 활성화를 중점 추진 중임.

그림 1. 4대 자유무역단지 범위 및 포지셔닝



자료: 「四大自贸试验区定位敲定 福建自贸试验区着力打两岸牌」, 『海西晨报』 (검색일: 2016. 3. 15).

- 2015년 4월 20일 국무원에서는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포, 국내 4대 자유무역시범구에 동일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한다고 밝힘.
-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민경제산업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 GB/T4757-2011)」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15개 산업 유형, 50개 조목 및 122개 항목의 특별관리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동 리스트는 같은 해 3월 발표된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규제 내용을 반영해 18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에 적용하던 2014년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할 때, 新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 범위를 12.2% 축소하고, 개방도 및 투명도가 제고됨.

표 3.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 취소 항목

분야	내용
제조업	농산품 가공업, 주류·음료·정제차 제조업,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업, 의약 제조업(中药 제외), 일반·특수 설비 제조업, 전기기계·기자재 제조업
건축업	도시전철·경전철 등 철로교통설비 및 경영
도·소매업	식량·목화 도매, 음향·영상 제품 및 농약 등의 소매, 도서·신문·정기간행물 체인 경영, 주유소 건설 및 경영, 직판 및 온라인 판매
정보기술서비스업	전자상거래
금융업	보험중개기관(보험 중개 및 대리·손해사정공사 포함), 증권투자자문기관
부동산업	고급 호텔 및 오피스텔·국제회의전시센터 투자, 부동산 중고시장 거래
상업서비스업	인력자원 중개기관, 해외관광 전문여행사

자료: 「中国自由贸易试验区: 新版负面清单继续放宽外资准入」, 『商务与税务快讯』, 검색일: 2016.3.15

3. 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전략 평가

■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부교장 린구이쥘(林桂军)은 중국이 처음으로 자유무역구 구축 관련 ‘정층설계(Top-design)’인 「의견」을 발표한 것이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 경제발전방식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함.

- 현재 중국은 TPP, 생산능력 과잉,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 국내외로 경제발전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 주도의 TPP 체결이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중국은 세계 최대 상품무역대국이자 2대 경제대국이나, 현재 경기하강 위기 및 경제발전 방식 전환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2020년 이내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 목표 실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임.
-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 가능한 일련의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개혁개방을 심화해야 하며,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이외에도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인 대외관계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제경제 정세에 따른 순응이자 외부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이며, 국내외 경제리스크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고수준’은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 추진의 핵심 방향으로, FTA를 통한 대외경제협력 범위 확대 및 개방도 제고를 의미함.
- TPP 체결이 중국으로의 외자유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통해 강조한 외자 진입 관련 조치(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적용)는 중국의 제도 및 투자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외자유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생산능력 과잉, 상품 품질 저하, 수출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들은 모두 국내시

장의 높은 장벽과 연관성이 있는데, 「의견」의 주요 추진전략 중 하나로 명시한 상품무역 개방수준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과 기업 및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글로벌 가치체인 형성은 중국 대외개방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의견」이 포함한 서비스업 개방,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은 글로벌 가치체인의 확대 및 업그레이드에 유리한 조치가 될 것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협력실 장젠핑(张建平) 주임은 자유무역구 전략을 가속화함으로써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며,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재편 과정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최근 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EU·일본 FTA 등 선진경제체들이 경제통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음.
- 현재 공업화·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자유무역구 전략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통합 및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중국 내 생산요소 원가 상승으로 일부 저부가가치 제조업 생산능력은 중국에서 기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고부가가치 상품무역과 서비스업이 신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구 전략을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대외무역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중국은 브랜드가치 및 기술 함량을 갖춘 고부가가치 상품무역 발전 가속화와 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자본 유치 등의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시도 중임.
-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무역구 전략 확대는 중국의 새로운 대외무역 기회 창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며, FTA 파트너국과의 新글로벌 공급체인 및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더욱 많은 협력 파트너와 중국의 대규모 시장 및 고성장을 공유하고, 나아가 더 많은 국가들과 이익공동체 및 운명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

■ 한편 중국이 구축한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는 경험 및 협력 방식상 일련의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자유무역협정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위 또한 5개 대륙의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는 등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영향력은 선진국의 네트워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서 보여지는 다양성은 일정부분 중국의 전방위적 자유무역구 확대 전략을 반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협정의 규모 및 영향력은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중국이 자유무역구 확대 과정에서 상대국의 정세를 고려해 최대한 적합한 협력 방식 채택에 주력하고 있으나, 협상 과정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함.
- 현재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초기 발전단계로 국제협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과학적으로 구체적인 평가나 논증이 어려우며, 정책 결정이 지속가능성 연구보다 우선시되고 있음.
- 또한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협상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전략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완비되고 있으나, 시스템적 보완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o 중국은 WTO 가입(2001년) 전까지 지역통합협력보다는 다자간 무역체계 내에서의 무역 자유화 실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유무역구 건설을 비교적 늦게 시작했으며, 자유무역구 건설의 목표 설정 및 지도방향이 명확하지 않음.
- o 현재 중국은 자유무역구 전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나, 전략계획 수립 및 일부 자유무역지대의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는 체계적 조정이 필요함.

<참고자료>

- 『北京晨报』. 2015. 「中韩中澳关税减让20日起实施 中方零关税产品将超90%」. (12월12일)
- 『国际在线』. 2016. 「商务部：将推进双多边自贸协定谈判 优化自贸区布局」. (1월7일)
- 『国务院』. 2016. 「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 (2월26일)
- 『海西晨报』. 2015. 「四大自贸试验区定位敲定 福建自贸区着力打两岸牌」. (4월21일)
- 『经济参考报』. 2015. 「以自贸区战略促进可持续发展」. (12월31일)
- 『经济日报』. 2015. 「加快实施自贸区战略十分迫切」. (12월23일)
- 『人民日报』. 2015. 「自贸协定推动中澳务实合作升级」. (12월24일)
- 『商务部新闻办公室』. 2014. 「中冰经贸部长宣布自贸协定将正式生效」. (6월30일)
- 『商务部新闻办公室』. 2015. 「中国与东盟结束自贸区升级谈判并签署升级《议定书》」. (11월23일)
- 『商务与税务快讯』. 「中国自由贸易试验区：新版负面清单继续放宽外资准入」, 第21期.
- 『新华社』. 2013.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11월16일)
- 『现代管理科学』. 2016. 「我国加快推进自由贸易区战略研究」, 第1期.
- 『中国政府网』. 2015.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的通知」. (4월20일)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조수영(swintiamo@naver.com)